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. 10. 15 선고 2018가단69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(개명전: B)

피 고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

담당변호사 김미진

변론 종결 2019. 9. 24

판결 선고 2019. 10. 15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1,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9.부터 2019. 10.1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-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13, 14, 15, 16, 12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7㎡를 인도하고, 같은 도면 표시 13, 2, 3, 4, 20, 19, 18, 17, 15, 14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2㎡지상 수목을 수거하며, 위 (나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-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,221,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. 4. 8.부터 위(가), (나)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9,75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고,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E 대 2,334㎡ 및 그 지상 건물과 담장을 각 1/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.

○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13, 14, 15, 16, 12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7㎡를, 위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2, 3, 4, 20, 19, 18, 17, 15, 14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2㎡ 를 각 침범하고 있었는데,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. 5. 2.경 위 건물과 담장 중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내지 3, 17내지 1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을 6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인도 및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, 2, 3, 4, 20, 19, 18, 17, 15, 14, 13의 각 점을 차례로

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2㎡ 지상에 존재하는 피고들 소유의 수목으로인하여 원고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음을 이유로, 피고들을 상대로 위 수목의 수거와 위(가),(나)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,갑 20, 23내지 27, 29,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(나) 부분에 피고들 소유의 수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13, 14, 15,16, 12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7㎡과 같은 도면 표시 13, 2, 3, 4,20, 19, 18, 17, 15, 14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2㎡를 점유·사용함으로써 위 (가),(나)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,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한편, 원고는 위 (가), (나)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구하나,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·수익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피고들 소유의 건물과 담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위 (가), (나) 부분의 면적을 초과한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.

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([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3다51539판결](#)참조),이 법원의

F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,2016. 1. 8.부터 2017. 1. 7.까지 위 (가) 부분의 임료는 50,680원, 위 (나) 부분의임료는 231,680원,2017. 1. 8.부터 2018. 1. 7.까지 위 (가) 부분의 임료는 53,200원,위 (나) 부분의 임료는 243,200원, 2018. 1. 8.부터 2019. 1. 7.까지 위 (가) 부분의 임료는 53,200원, 위 (나) 부분의 임료는 243,200원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.1. 8. 현재 위 (가) 부분의 임료는 연 55,160원, 위 (나) 부분의 임료는 연 252,160원인사실이 인정되고,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,2016. 1. 8.부터피고들이 위 건물과

담장을 철거한 2019. 5. 2. 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971, 986원 + 50, 680원 + 231, 680원 + 53, 200원 + 243, 200원 + 53, ■ 원 + 243, 200원 + (55,160원 + 252,160원) x 115일 / 365일, 원 미만 버림]임이 계산상 명백하다.

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971,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. 7. 9.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. 10. 1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.

판사 함철환

별지